KOSHA GUIDE C - 50 - 2012

- (2) 기계의 후진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현장의 상황, 통행차량현황, 부근작업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험개소의 유무와 위급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.
- (4)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, 좌우 양측 2m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급하게 전 후진 및 급선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비탈길 등의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 등을 피하며, 반드시 제동 확인후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되,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휀스 또는 차량유도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4.2 근접작업 근로자의 준수사항

- (1) 기계의 주행작업중에는 기계의 작업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의 성질상 근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방법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3)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(4)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고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4.3 관리감독자의 준수사항

- (1) 기계 주행작업중에는 그 작업 범위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부득이하게 근접작업이 필요한 때에는, 근로자에게 근접작업시 필요한 주의와 작업방법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.